

미리 보는 2007년 개정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POINT (II)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기타 분야

(재정경제부, 2007. 1.)

<목 차>

I. 법인세법 분야

II. 법인세법·소득세법 공통 분야

III. 소득세법 분야

IV. 부가가치세법 분야

V.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 ① R&D 세액공제 우대(50%)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
- ②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
- ③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 ④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
- ⑤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자격
- ⑥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확대
- ⑦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 ⑧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 요건
- ⑨ 매입자 발행(self-biling)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
- ⑩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 ⑪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
- ⑫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
- ⑬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VI. 국세기본법 분야

- 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②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③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VII. 기타 분야

- ①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정부는 2006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2006. 12. 30.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V.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① R&D 세액공제 우대(50%) 대상 위탁개발비용 범위 (조특령 §9)

| |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위탁한 R&D개발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u>50%</u> (중전 40%)를 세액공제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위탁 R&D개발비 중 다음 기관에 위탁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u> ○ <u>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u>(부설연구기관을 포함) ○ <u>국내 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전담부서</u> ○ <u>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u> ○ <u>산학협력단, 산업기술조합</u> ○ <u>기술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u> |

■ 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대학간의 R&D 협력 지원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농지 취득기간 연장 (조특령 §67)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농지 대토시 양도세 1억원(5년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토 농지 취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 새로운 농지 취득 · <u>종전농지 수용시는 2년내</u> 새로운 농지 <u>취득</u> |

| | |
|--------------|--|
| 1년내 종전 농지 양도 | |
|--------------|--|

■ 개정이유

수용은 계획 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양도에 비해 대체농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 후 대체농지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종전 농지 수용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수용대상자의 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현행 종전 농지 수용기한 1년을 유지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수용되어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배정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령 §82의 4)

| 현 행 | 개 정 안 |
|--|---|
| <p><input type="checkbox"/>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p> <p>○ <u>증권금융회사에 예탁</u></p> <p>○ <u>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u></p> <p>○ <u>조합원이 소액주주</u></p> | <p>○ 종전 규정(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u>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비과세</u></p> <p>* 가배정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가배정받은 우리사주에 대하여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5. 9. 경과조치)</p> |

■ 개정이유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④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요건 (조특령 §92의 5)

| |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채권투자펀드의 <u>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5%)</u> → 2009년 말까지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정크본드의 범위 ○ <u>2 이상 신용평가업자에 의해 투자부적격등급(BB+ 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채권(일반회사채, 전환사채 등) 및 어음</u> <input type="checkbox"/> 과세특례 요건 ○ <u>매 3개월 단위로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각각 10%, 60% 이상일 것</u> ○ <u>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u> <input type="checkbox"/> <u>요건 위배시 해당 결산기간분에 대해서는 특례 배제</u> |

■ 개정이유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외국인투자 촉진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⑤ 근로장려금 산정 및 신청자격 (조특령 §100의 2~§100의 7)

| |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input type="checkbox"/> EITC 지급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 및 근로장려금 산정과 신청 ○ <u>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u> ○ <u>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u> ○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무주택</u> ○ 근로장려금 신청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u> 첨부 ○ 근로장려금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활용·산정</u>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부양자녀의 범위 ○ 친자녀 ○ <u>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u>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u>손자녀·형제자매</u> □ 총소득(연간 1,700만원 미만)의 범위 : 소득세법상 <u>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u>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 재산(1억원 미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 기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활용하여 평가 □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를 「<u>근로장려금신청서</u>」 및 「<u>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u>」 2종으로 <u>간소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 신청서 : 부양자녀, 총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신청액 등 기재 -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 : 부양자녀·총소득·재산 현황 등 신청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 기재 ○ 「<u>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u>」를 제출하면 <u>관련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u>, 세무서장이 <u>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간 행정자료 공유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증빙자료 제출 범위를 최소화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1만원 단위로 작성 ○ 복잡한 계산 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결정 |
|--|---|

■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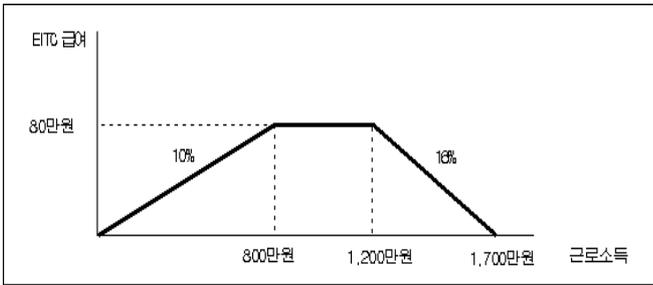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

■ 적용시기

근로장려세제 입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보다 면밀한 시행준비를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시행시기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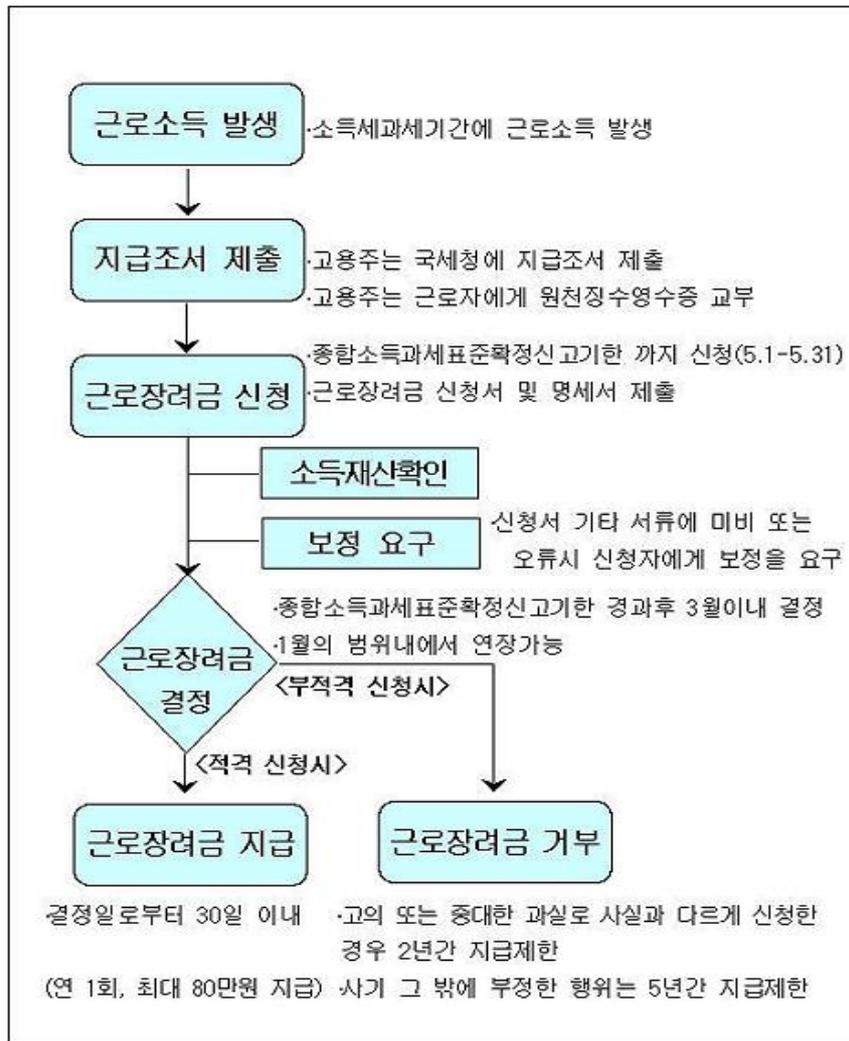
■ 참 고

• 근로장려세제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도입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 위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현행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상위계층 별도 지원 ○ EITC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 | | | | | | | | | | |
| 수급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해연도 총소득이 <u>1,700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인</u> 근로자 가구 ② <u>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u> 가구 ③ 일반 재산합계액이 <u>1억원 미만인</u> 무주택 가구 | | | | | | | | | | | | |
| 적용 단위 및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 가구단위 적용 |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 | | | | | | | | | |
| |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 형태의 미국식 EITC 모형 채택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산정 | 부부 합산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 산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연간 근로소득</th>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증구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0~8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로소득 × 10%(점증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탄구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만원~1,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만원 정액 지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점감구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만원~1,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0만원 - 근로소득) × 16%(점감율)</td> </tr> </tbody> </table> | 연간 근로소득 | | 근로장려금 | 점증구간 | 0~800만원 | 근로소득 × 10%(점증율) | 평탄구간 |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 점감구간 | 1,200만원~1,700만원 |
| 연간 근로소득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
| 점증구간 | 0~800만원 | 근로소득 × 10%(점증율) | | | | | | | | | | | |
| 평탄구간 | 800만원~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 | | | | | | | | | | |
| 점감구간 | 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점감율) | | | | | | | | | | | |

| | | <p>단,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 산식에 의한 계산의 번거로움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1만원 단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산정</p>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장려금 산정표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부부합산 근로소득</th> <th rowspan="2">근로장려금</th> </tr> <tr> <th>이상</th> <th>미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점증구간</td> <td>∴</td> <td>∴</td> <td>∴</td> </tr> <tr> <td>100만원</td> <td>101만원</td> <td>101천원</td> </tr> <tr> <td>101만원</td> <td>102만원</td> <td>102천원</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평탄구간</td> <td>800만원</td> <td>1,200만원</td> <td>800천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점감구간</td> <td>이상</td> <td>미만</td> <td></td> </tr> <tr> <td>1,500만원</td> <td>1,501만원</td> <td>320천원</td> </tr> <tr> <td>1,501만원</td> <td>1,502만원</td> <td>318천원</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구 분 | 부부합산 근로소득 | | 근로장려금 | 이상 | 미만 | 점증구간 | ∴ | ∴ | ∴ | 100만원 | 101만원 | 101천원 | 101만원 | 102만원 | 102천원 | ∴ | ∴ | ∴ | 평탄구간 | 800만원 | 1,200만원 | 800천원 | | ∴ | ∴ | ∴ | 점감구간 | 이상 | 미만 | | 1,500만원 | 1,501만원 | 320천원 | 1,501만원 | 1,502만원 | 318천원 | ∴ | ∴ | ∴ |
|----------------|----------------|--|-------|-----------|--|-------|----|----|------|---|---|---|-------|-------|-------|-------|-------|-------|---|---|---|------|-------|---------|-------|--|---|---|---|------|----|----|--|---------|---------|-------|---------|---------|-------|---|---|---|
| 구 분 | 부부합산 근로소득 | | | 근로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증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만원 | 101만원 | 101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만원 | 102만원 | 102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탄구간 | 800만원 | 1,200만원 | 80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감구간 | 이상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만원 | 1,501만원 | 32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1만원 | 1,502만원 | 318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 <p>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u>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말 이내) 내에</u>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u>신청</u></p> <p>-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 <p>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를 다음의 2종으로 간소화</p> <p>-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의 결정 및 환급 | <p>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하여 원칙적으로 <u>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절차



⑥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 15)

| 현 행 | 개 정 안 |
|--|--|
| <p>□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p>○ 투자기준: 총사업비 미화 <u>1천만불 이상</u></p> <p>○ 대상 업종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5개 업종</p> | <p>○ 투자기준: 총사업비 미화 <u>5백만불 이상</u></p> <p>○ <u>대상업종 추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 -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 교육원, 연수원 |

■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기구에 대한 투자 촉진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개 념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지정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지정요건은 완화 | |
| 지정방식 | 사후지정 | 투자자 유치 후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개발 |
| | 사전지정 | 특정지역 선 지정·개발 후 입주기업 유치 |
| 지정절차 | 지정계획 수립(도지사) → 지원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도지사) | |
|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 법인·소득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관 세 | 100% 감면 |
| | 지방세 |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 |
| | 기 타 |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대체초지 조성비 등 50% 감면 |

⑦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요건** (조특령 §117의 2, 소득령 §113의 2)

| |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input type="checkbox"/>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input type="checkbox"/> <u>표준공제 확대: 60만원 → 100만원</u> <input type="checkbox"/> <u>세부담상한제 확대: 수입금액의 1.3배 초과 → 1.2배 초과</u> |
|---------------|---|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input type="checkbox"/> 수입금액 자동검증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u>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u> <input type="checkbox"/> <u>ERP, POS 등을 도입한 사업자</u> <input type="checkbox"/> 사업용계좌 개설 <input type="checkbox"/>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는 <u>복식부기의무자</u> 에게 있는 것이나, |

| | |
|--|--|
| | <p><u>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설을 의무화</u></p> <p><input type="checkbox"/> 장부 기장(간편장부 포함)</p> <p><input type="checkbox"/> <u>과세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1/3을 초과하지 않을 것</u></p> |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성실신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 요건 (조특령 §117의 2 ⑭)

| | |
|-------------------|---|
| <u>조세특례제한법 개정</u> |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전자어음 결제액이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 어음 결제액의 50% |

■ 개정이유

거래투명성 효과가 있는 전자어음 결제 유도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전자어음의 개념 및 과세특례대상 사업자의 범위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전자어음의 개념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터넷상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유통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전자유가증권으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

| | On-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됨. | | | | | | | | | | | | | | | | |
|---------------------------|--|----------------|----------------|-----|-------|-----|-----|--------------|---|-----|-----|--------------|---|-----|-----|--------------|---|
| 전자어음의 도입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가 원천 불능하여 어음 거래의 안전성 확보 • 관리기관의 전자어음 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지급 완료되므로 따로 어음 용지를 작성, 보관할 필요가 없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이 관리기관 주 전산망에 일정기간 보존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관리기관 발행인의 결제능력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하여 부도를 미연에 방지 | | | | | | | | | | | | | |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전자어음 도입 사업자의 범위 | <p>다음 ① ~ 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p> <p>①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u>중</u> <u>큰 금액을 초과</u></p> <p>* 사 례: 금년도 어음결제액이 10억원인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판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금년도 전자어음 결제액</th> <th>②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th> <th>비 교</th> <th>적용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6억원</td> <td>5억원</td> <td>①>Max(5억원,②)</td> <td>○</td> </tr> <tr> <td>6억원</td> <td>7억원</td> <td>①<Max(5억원,②)</td> <td>×</td> </tr> <tr> <td>5억원</td> <td>4억원</td> <td>①=Max(5억원,②)</td> <td>×</td> </tr> </tbody> </table> <p>② 자산규모 70억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p> <p>③ 업종별 종업원 일정규모 미만</p> <p>* 업종별 종업원 기준인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 기타 : 10명 미만 <p>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닐 것</p> <p>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p> <p>⑥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요건을 갖출 것</p> | ① 금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 ②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 비 교 | 적용 여부 | 6억원 | 5억원 | ①>Max(5억원,②) | ○ | 6억원 | 7억원 | ①<Max(5억원,②) | × | 5억원 | 4억원 | ①=Max(5억원,②) | × |
| ① 금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 ②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 | 비 교 | 적용 여부 | | | | | | | | | | | | | | |
| 6억원 | 5억원 | ①>Max(5억원,②) | ○ | | | | | | | | | | | | | | |
| 6억원 | 7억원 | ①<Max(5억원,②) | × | | | | | | | | | | | | | | |
| 5억원 | 4억원 | ①=Max(5억원,②) | × | | | | | | | | | | | | | | |

⑨ 매입자 발행(self-biling) 세금계산서 제도 신설 (조특령 §121의 4)

| |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발행가능 사업자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모든 매입자(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u> □ 발행대상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일반과세자인 매출자</u>로서 세금계산서 미교부자 □ 확인대상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건당 <u>10만원 이상 ~ 500만원 이하</u> □ 확인신청 및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시기 이후 <u>15일 이내</u> 세무관서에 서면 신고 ○ <u>관할세무서의 확인: 신고일 ~ 익월말일까지</u> ○ 거래사실의 <u>입증책임: 매입자</u> |
|--|---|

■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 적용시기

2007.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매입자 발행(self-biling) 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발행대상 사업자 | <u>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u>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제외 |
| 면세사업자의 포함 이유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u>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u> 로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증빙으로 사용가능하므로 발행대상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추징당하므로 이를 해소 * 건당 5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징 |
| 발행대상 거래 | <u>사업자별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u> |

| | |
|--------------|---|
| | *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시행 초기에는 과세관청의 세무행정력을 감안하여 대상거래의 범위를 결정 |
| 확인 신청 및 확인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u>15일 이내</u>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u>거래사실확인신청서</u>와 <u>거래증빙서류</u>를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u>신고일로부터 익월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자에게 통보</u>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u>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u> 가능 |

⑩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조특령 §121의 5)

| | |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u>소득공제 허용</u>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대상 사업자 :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과세 및 면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신고 및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u>15일 이내</u>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신고서류: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u>증빙 제출</u> 거래증빙의 범위: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u>거래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u> <input type="checkbox"/> 거래사실의 입증책임: <u>소비자</u> |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 확보

■ 적용시기

2007.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 고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대상사업자 | 과세 및 면세사업자로서 <u>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u> (예)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인적용역,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 |
| 신고 및 확인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⑪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 (조특령 §1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각종 감면배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상습거부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회 이상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상습거부자에 대한 추가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⑫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 확대 (농림특례규정 §2 ④)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및 어촌계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주업법인 |

■ 개정이유

어업주업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업주업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 어업주업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 공급대상 어민의 범위에 기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

■ 적용시기

2007.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⑬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농림특례규정 §7 별표6)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 ○ 농업용 필름 등 9개 품목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 어상자 등 12종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 ○ 채소재배용 차광망 ○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필름 ○ 종자류(화훼용) ○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자동조타장치 |

■ 개정이유

영농·영어 비용 경감

■ 적용시기

2007.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VI. 국세기본법 분야

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국기령 §53)

| 현 행 | 개 정 안 |
|--|--|
|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세청 차장) ○ 위원: 10인 - 내부(4인), 외부(6인) |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구성 조정 ○ (좌 동) ○ 위원: <u>30인</u> 이내 - 내부(10인 이내), 외부(20인 이내) |

| | |
|--------------------|--|
| <u><신 설></u> | <input type="checkbox"/> 개최 회의 구성 ○ 위원장 (국세청 차장) ○ 위원: <u>10인</u> - 내부(4인), 외부(6인) |
|--------------------|--|

■ **개정이유**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Pool제 운영

■ **적용시기**

2007. 7. 1. 이후 위원회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국기령 §63의 5)

| | |
|----------|---|
| 국세기본법 개정 |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
|----------|---|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input type="checkbox"/>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u>①·② 모두 충족</u>) <u>①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u> - 개인 : <u>간편장부대상자*</u> 규모 미만 * 도·소매(3억원),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 서비스(0.75억원) - 법인 : 1억원 <u>② 성실성 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u> - <u>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u> - <u>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u> - <u>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의 사실이 없을 것</u> - <u>사업용계좌 개설·이용할 것 (개인에 한함)</u> - <u>최근 3년간 조세법 처벌받은 사실 없을 것</u> - <u>납부기한 현재 국세채납사실이 없을 것</u> |

■ **개정이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③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국기령 §65의 4)

| 현 행 | 개 정 안 |
|--|---------------------------------------|
| <p><input type="checkbox"/>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p> <p>○ 포상금 지급대상 제보 :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p> <p>* 포상금 : 탈루세액의 2~5% (1억원 한도)</p> | <p>○ 5억원 이상을 <u>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u></p> |

■ 개정이유

탈세제보 활성화

■ 적용시기

이 영 공포일 이후 제보하는 분부터 적용

VII. 기타 분야

①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 (특소령 §33 ① 3호의 2)

| 현 행 | 개 정 안 |
|---|--------------------------------------|
| <p><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조건부 면제</p> <p>○ 5년 이내에 양도시 추정 - 다만, 장애인 사망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u>3월 이내에 장애인용 등으로 양도시 제외</u></p> | <p>- 장애인 사망시 <u>특소세 추정 규정 폐지</u></p> |

■ 개정이유

상속인이 장애인 승용차를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로 양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소비세 추정 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

■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